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7. 12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3항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제4호 “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위촉 위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항제4호의 “재난”을 “소방, 경찰 등 재난”으로 수정함.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“재난”을 “소방, 경찰 등 재난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	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재난</u>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	4. <u>소방, 경찰 등 재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
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(이하 “협력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
2.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3.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·제보
4. 재난 발생시 인적·물적 자원 동원, 인명구조·피해복구 활동 참여,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
5.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
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

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
2.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
3.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
4. 소방,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, 단체·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
5.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6.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4조(운영)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1. 평상시 :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
2. 재난 발생시 :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
 2.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
 3.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의사결정사항의 이행) 구미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